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 6. 30.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2월 5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12월 5일
- 다. 상정일자 : 제76회 제2차정례회 제9차위원회 (2000. 12. 13)
제76회 제2차정례회 제11차위원회 (2000. 12. 15)
제81회 제1차정례회 제3차위원회 (2001. 6. 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 은 규

가. 제안이유

행정 능력의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통·반 조직의 활성화와 통민방위대장 및 일선행정의 보조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통·반장의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기타 부적절한 일부 용어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통·반장의 정년을 70세이하에서 65세이하로 하향 조정함.
(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
- 임기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 당연 해촉. (안 제4조)

○ 부적절한 용어인 "반장의 일시 유고시"를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보완 함. (안 제7 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포구소속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 중에서 통·반장의 상한 연령을 현행 70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위촉자격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 안 제4조에서는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5조에서 정하는 통장의 위촉 상한 연령인 65세 이하에 도달하면 당연 해촉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통·반장의 위촉 상한 연령을 65세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위촉된 반장도 상한 연령에 도달하면 당연 해촉되도록 규정하였음.

<검토의견>

○ 2000. 12. 1일 현재 마포구에 위촉된 449명의 통장과 3,339명의 반장에 대한 연령분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59세 이하에서 65세 이하까지의 통장은 422명, 반장은 3,137명이고 66세 이하에서 70세 이하까지의 통장은 27명, 반장은 202명이 되겠으며, 2000. 12. 1일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 통장 임기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통장의 정년이 60세 이하인 구가 17개구, 65세 이하인 구가 6개구, 정년규정이 없고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이 허용된 구가 1개 구인 반면 마포구는 7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동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통·반장들의 역할이 더욱더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한연령을 6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고령화 시대에 연령만을 기준하여 정년을 하향 조정함에 따른 해당 통·반장들의 이해와 통·반장 임무수행에 지장은 없을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66세이상 통·반장이 얼마나 되나?

○ 답변요지(이은규 총무과장) : 통장 27명 반장 202명임.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이유는?

○ 답변요지(이은규 총무과장) : 고령이면 활동성이 저하되고, 타구의 경우 60세 이하가 17개 구, 65세 이하가 6개 구, 연령제한 없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구가 1개 구이며, 각 동에서는 21개 동이 65세 이하 찬성이며 하향조정에 반대하는 동은 3개 동임.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현 통장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둘 수 있나?

○ 답변요지(김영남 주민자치과장) : 조례안에 의거 유예기간을 둘 수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0. 1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 능력의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통·반 조직의 활성화와 통민방위대장 및 일선행정의 보조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통·반장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기타 부적절한 일부 용어를 보완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통·반장의 정년을 70세이하에서 65세이하로 하향 조정 함
⇒ 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

나. 임기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 당연 해촉
⇒ 안 제4조에 신설

다. 부적절한 용어인 “반장의 일시 유고시” 를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그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로 보완 함
⇒ 안 제7조 제2항

3.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2000.1.12 법률 제6115호) 제4조 제6항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00.11.20~11.3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조례·규칙심의회의심의·의결 : 2000. 12. 4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기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 당연 해촉된다.

제5조제2항 및 제4항중 “70세이하” 를 각각 “65세이하” 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동장이 위촉한다” 를 “동장이 위촉하되, 위촉된 해당 반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 당연 해촉된다” 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반장의 일시 유고시” 을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서 신설)</p>	<p>제4조(통장의 임기) ----- ----- 다만 임기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 당연 해촉된다.</p>
<p>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생략) ②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70세이하의 자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생략) ④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70세이하의 자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⑤(생략)</p>	<p>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현행과 같음) ②----- 65세이하 ----- ----- ----- ----- ③(현행과 같음) ④----- 65세이하 ----- ----- ----- 동장이 위촉하되, 위촉된 해당 반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 당연 해촉된다. ⑤(현행과 같음)</p>
<p>제7조(임무) ①(생략) ②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임무) ①(현행과 같음) ② -----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p>